

의안 번호	1644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의안】</b> 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0. 5. 29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: 2020. 5. 29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: 2020. 6. 15.(월)

### 2. 제안이유

함월구민운동장 및 중구수영장의 공공체육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제3자(민간)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0조제2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설치현황: 총 3대
- 나. 설치대상

시설명	설치위치	수량	판매품목	비고
함월구민운동장	휴게실	1대	음료 및 커피	
중구수영장	로비	2대	음료 및 원두커피	

- 다. 운영방식: 온비드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위탁운영
- 라. 사용수익기간: 계약일로부터 3년
- 마. 민간위탁 필요성
  - 1)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의 자판기 설치 건의·개선 요구가 많은 함월구민 운동장 및 중구수영장에 자동판매기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

#### 4. 근거법규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0조제2항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함월구민운동장 및 중구수영장의 공공체육시설에 자  
동판매기를 제3자(민간)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  
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「울산광  
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관계 규정에  
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 
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# 근거법규

##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9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
2.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
3. 합월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
5. 쓰레기봉투 공급대행사업
6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0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, 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③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- 제7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**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, 관계공무원 3명, 당해전문가 6명 이내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해당 수탁기관 선정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-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